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21(금)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건소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 V. 검토내용

### 1. 보건소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결산서 p)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11,171,394,000	11,465,410,360	11,451,629,360	99.88%
보건정책과	1,244,265,000	1,446,509,190	1,438,160,190	99.42%
건강증진과	8,008,518,000	8,029,989,050	8,029,989,050	100.00%
의약과	1,508,463,000	1,558,089,930	1,558,089,930	100.00%
위생과	410,148,000	430,822,190	425,390,190	98.74%

-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11억 7,139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4억 6,541만원, 세입결산액은 114억 5,162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99.88%임.

##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21,669,660,000	18,203,364,610	1,200,580,750	931,948,490	1,333,766,150	6.15
보건정책과	5,233,497,000	3,556,017,430	1,082,256,250	92,926,770	502,296,550	9.60
건강증진과	12,890,150,000	11,453,529,090	30,000,000	773,589,030	633,031,880	4.91
의약과	2,903,127,000	2,562,188,680	88,324,500	64,079,860	188,533,960	6.49
위생과	642,886,000	631,629,410	0	1,352,830	9,903,760	1.54

-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216억 6,966만원이며, 지출액은 182억 336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8만원, 보조금반납금은 9억 3,194만 8천원, 집행잔액은 13억 3,376만 6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6.15%입니다.

### 1) 다음연도 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423,335	90,284	90,284	332,552	
보건 정책과	독산 보건분소 지소화 추진	350,000	49,364	49,364	300,137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보조금 간주처리(23.9)로 연도내 지출 불가
건강 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30,000	0	0	30,000	입찰공고, 업체선정, 원가심사 의뢰 등 행정처리 절차상 2달 이상 소요 예상으로 연도내 지출 불가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의약과	공공야간약국 운영	43,335	40,920	40,920	2,415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23.12.22 추가 교부하여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

○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3건 3억 3,255만 2천원임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b>계</b>		<b>1,281,948</b>	<b>476,264</b>	<b>369,121</b>	<b>868,028</b>	
보건 정책과	독산1동 복지시설 건립	21,890	21,233	0	21,233	건축공사 일정 변경 통보로 공사 일정 연기로 설계용역 예산 사고 이월하여 집행 예정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	1,127,758	366,871	366,871	760,886	검체채취일이 '23.8.31 이후인 확진환자 중 중증환자에 한해 격리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22년 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사고이월하여 '24년에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을 유지
의약과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지원	132,300	88,160	2,250	85,909	'23.12.8 최종계약은 완료하였으나 폐수관 정비 및 장비 설치장소 확보, 설치 전문인력의 작업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비 연내 지출 불가

○ 보건소 사고이월사업은 3건 8억 6,802만 8천원임

## 2)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감액	증액	
보건소			524,401	26,160	26,160	
보 정 책 과	건강도시금천 비만예방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6,060	100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전용
		301-02 국제부담금	700		100	
건 강 증 진 과	금천아이맘 건강센터운영	301-14 기타보상금	22,000	2,000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확보
	서울시남녀 임신준비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142		2,000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060	4,060		'23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역 통지 에 따라 사업비 교부하고자 함
		307-05 민간위탁금	15,340		4,060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	1,600		'23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역 통지 에 따라 사업비 교부하고자 함
		307-05 민간위탁금	19,400		1,600	
	우리아이 간호사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	242,882	5,400		2022년 대비 2023년 우리아이 간호사 4대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부족분 발생하여 전용
		304-04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6,117		5,400	
의 약 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0	10,00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부족으 로 필요 예산 전용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301-14 기타보상금	26,200		10,000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	3,00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부족으 로 필요 예산 전용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900		3,000	

○ 보건소 예산의 전용은 7건 2,616만원임.

### 3)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차	찰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잔	출액	예비비
계	21,669,660	1,333,766	6.2	702,193		0	0	631,573	0	
보건정책과	5,233,497	502,296	9.6	57,126		0	0	445,170	0	
건강증진과	12,890,150	633,032	4.9	558,361		0	0	74,671	0	
의약과	2,903,127	188,534	6.5	86,706		0	0	101,828	0	
위생과	642,886	9,904	1.5	0		0	0	9,904	0	

- 2023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13억 3,376만 6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2%임.
-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219만 3천원, 지출잔액 6억 3,157만 3천원임.

### 다. 기금결산현황

(단위 : 원)

구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883,220,577	-15,846,787	99,519,613	115,366,400	867,373,790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883,220,577	-15,846,787	99,519,613	115,366,400	867,373,790

- 2023회계연도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액은 9,951만원 9천원이며 사용액은 1억 1,536만 6천원으로 최종 2023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6,737만 3천원임.

## 라. 예비비 결산현황

- 2023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음

## 2.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6.2%로 전년대비 0.7% 증액됨.
-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한 구체적인 소요액을 추계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